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2. 11. 2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10월 21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26일

라. 상정일자: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10. 3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재정국장 정언택)

가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(2022.12.31.)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의2)
-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(2027.12.31.까지)하고 상위 법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.
- 안 제6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,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1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1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심의하도록 정비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개정한 것으로,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조례 현행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4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0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상위 법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더욱 내실있게 운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 (안 제3조의2)

- 전단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으로 변경

나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상위 법 규정사항 반영 (안 제6조)

- 제1항제5호 중 “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”를 “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”로 변경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: 2022. 9. 15.~10. 5.(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전단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5호 중 “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”를 “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영등포구의회”를 “영등포구의회 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2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<u>10분의 5</u>를 초과하여 <u>변경하는 경우</u></p> <p>6.·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본항신설></p> <p>1. (생략)</p>	<p>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7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<u>10분의 2</u>를 초과하여 <u>변경하는 경우</u></p> <p>6.·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

<p>2. 서울특별시 <u>영등포구의회</u> 의 원</p>	<p>2. ----- <u>영등포구의회</u>(이하 “<u>구의회</u>”라 한다) ----- --</p>
<p>3. (생략) ④·⑤ (생략)</p>	<p>3. (현행과 같음) 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